

답 변 서

사 건 2016가소5067004 손해배상(기)

원 고 강 용 석

피 고 남 희 섭 외 5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1. 남희섭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 남희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희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고, 18대 국회의원
원이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예정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남희섭(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사단법인 오픈넷 대표로 오픈넷 사이트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합니
다)를 작성해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위자료
로 금 5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
라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이 사건 보도자료는 오픈넷이 작성, 배포한 것으로 피고 '개
인'의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오픈넷 사이트에 이 사건 보도자료(갑 제1호증)를 작
성해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소위 사

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넷')이 작성, 배포한 것으로 피고 '개인'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피고가 오픈넷의 대표로서 관리·감독 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도 책임주체인 법인을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들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원고가 무수한 개인들을 상대로 다수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도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소송에 대한 대응에 취약한 특정 개인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추가 논평이나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의견'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원고의 모욕죄 고소 남발을 합의금 장사라고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순수한 의견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피해자 의장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다... 이러한 언행이 제1군의회 의 대표인 의장의 축사인가? 정말 되고 말고 식의 피해자 의장의 작태다. 마을의 대표가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이기에 자중하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어찌 안하무인으로 마을의 대표들을 유치원 원생 다루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군민 앞에서 되고 말고 식의 껌대기 연설은 하지 말고 진정 깊이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하여(공부 하고) 연설할 것을 충고한다"라는 표현은 순수한 의견 내지 논평일 뿐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대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유명인일 뿐만 아니라 전 국회의원이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로서, 명백히 공인인 원고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안은 공적인 관심영역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전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으로 강적들(TV조선), 강용석의 고소한 19(tvN), 썰전(JTBC)을 비롯한 다수의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등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여성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커지자 변호사로서의 본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자신에 대한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차

별적으로 고소하여 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합의금 장사까지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을 제1호증). 또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자신의 불륜 의혹을 언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을 제2호증), 지난 1월에는 종편 방송 패널 여러 명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을 제3호증).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개방·공유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기치 하에 2012년 12월 설립된 시민단체로, 특히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제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원고의 행동은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를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원고를 비판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난 2016. 1. 13.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자료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안임에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오픈넷이 직접 제보받은 원고의 모욕죄 고소와 민사소송 건수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하며, 언론 기사(을 제1호증)에 의하면 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인이자 변호사인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원고는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표현들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의견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표현들이 어떤 점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거나 모욕적이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

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피고로서는 향후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보다 구체화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자세하게 반박하고자 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하등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 제1호증 | 2016. 1. 11.자 SBS 뉴스 기사 |
| 1. 을 제2호증 | 2016. 1. 7.자 미디어오늘 기사 |
| 1. 을 제3호증 | 2016. 1. 12.자 경향신문 기사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2016. 2. 26.

피고 남희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가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 귀중